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-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제2-11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. 다만,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의 경우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

- 1. 이 특약의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해지될 경 우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"일반형"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 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.
- 2. 회사는 이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(환급률 포함) 수준을 "일반형"과 비교·안내합니다.
- 3. "1" 및 "2"에서 "일반형"은 "해약환급금 미지급형"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.
-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,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 급금을 지급합니다.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<부표2-1>"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"에 따릅니다.
-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5관 보험금 대리청구에 관한 사항

제2-12조 적용대상

이 특약의 계약자,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
제2-13조 보험금 대리청구인의 지정

- ① 계약자는 "이 특약을 체결할 때" 또는 "이 특약을 체결한 이후 「특약보험기간 중 "중등도이상치매상태"로 최종 진단확정」되기 전"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보험금의 대리청구인(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,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을 지정)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리청구인은 제2-14조(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)에 따라 변경지정하거나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 - 1.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
 - 2.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2-12조(적용대상)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.

제2-14조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

계약자는 이 특약을 체결한 이후 「특약보험기간 중 "중등도이상치매상태"로 최종 진단확정」되기 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
- 1.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(회사양식)
- 2.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등록부 (기본증명서 등)
- 3.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 행 신분증,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)

제2-15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

① 대리청구인은 제2-16조(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)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2-12조(적용대상)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(사망보험금 제외)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2인의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

대표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, 대표대리인이 사망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2-16조 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

- ① 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해당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 - 1. 청구서 (회사양식)
 - 2. 사고증명서 [사망진단서, "치매상태"에 대한 진단서, 진단서(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), 진료기록부(검사기록지 포함),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]
 - 3.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)
 - 4.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) 및 주민등록등본 등
 - 5.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
-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제6관 기타사항

제2-17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.

부표2-1 │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



구	분	적 립 기 간	지급이자
납입면제된 보험료 (제2-2조의2 및 제2-5조의2)	보험료납입면제 기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경우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
	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4.0%)
	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6.0%)
		보험료 납입면제 기일의 91일 이후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 + 가산이율(8.0%)
해약환급금 (제2-11조)		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	· 1년이내 : 평균공시이율의 50% · 1년초과기간 : 평균공시이율의 40%
		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	보험계약대출이율

- 주) 1.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,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 - 2.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 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 - 3. 가산이율 적용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 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 - ① 소송제기
 - ② 분쟁조정신청(다만,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합니다)
 - ③ 수사기관의 조사
 -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

- ⑤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
-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
- ⑦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

[50%장해납입면제형] (간편)보험료납입면제특약 (무배당, 갱신형)







약 관 목 차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참조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제2-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

제2-1조의3 개별 용어의 정의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제2-2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사유

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제2-3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

제2-4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

제2-5조 사고증명서

제2-5조의2 "보험금 등의 지급절차"에 대한 특칙

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제2-9조 특약의 소멸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2-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

제2-11조 해약환급금

제5관 기타사항

제2-12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

[부표2-1]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[부표2-2] 장해분류표

[50%장해납입면제형]

(간편)보험료납입면제특약(무배당, 갱신형)

- ※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보장이 가능합니다.
- ※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종목에 따라 특약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.
- 일반심사형의 경우: "(간편)" 부분이 없습니다.
- ※ "간편심사형"과 "일반심사형" 모두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1편 일반사항

[특약 약관] 제1편 일반사항 제1-1조부터 제1-13조까지를 이 특약 "제1편 일반사항" 으로 합니다.

※ [특약 약관] "제1편 일반사항"의 위치는 목차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제2편 개별사항

제1관 용어의 정의 등

제2-1조 특약의 보장개시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 또한,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. 다만,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-13조[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]에 따라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(효력회복)일로 합니다.

제2-1조의2 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

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년만기, 10년만기, 15년만기 또는 20년만기 갱신으로 하며, 제2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(이하 "갱신전 계약"이라 합니다)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. 다만, 갱신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

간 만료일까지가 "5년만기의 경우 5년", "10년만기의 경우 10년", "15 년만기의 경우 15년", "20년만기의 경우 20년"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 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를 이 특약의 보험기간으 로 합니다.

- ② 제1-9조(특약의 성립)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 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제1-12조[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(독촉)와 특약의 해 지]에서 정한 납입최고(독촉)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.
- ③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주계약의 보험기간(다만, 주계약 체결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하며,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 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 보험기간, 이하 같습니다) 만료일 로 합니다. 다만,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 해당일 이후인 경우에는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.
- ④ 제2항에 따라 갱신된 특약에 대해서는 갱신 전 특약의 약관을 준용합 니다.
-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.
 - 1.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제3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
 - 2. 제2-9조(특약의 소멸)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
 - 3. 주계약이 갱신형 보험인 경우 계약자가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계속 유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
 - 4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서 정하는 보험료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⑥ 갱신계약의 보험료,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은 갱신 시점의 나이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 니다.
- ② 회사는 갱신계약의 변경내용 및 보험료 등을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관련 내용을 서면, 전화(음성 녹음) 또는

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.

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계약자적립액

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.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

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,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[㈜]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.

㈜ 산출기초율 : 계약체결비용, 계약관리비용, 이율 및 위험률 등

제2-1조의3 개별 용어의 정의

제1-2조(용어의 정의) 외에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- 1. 장해 : <부표2-2> "장해분류표"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.
- 2.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: 다음을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으로 하며, "이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"과 "각「보험료납입면제대 상계약」의 보험료 납입기간"이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.

[최초계약의 경우]

- 가.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갱신형 주계약(전환형 계약 제외)
- 나. 최초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계약에 부가된 갱신형 특약(이 특약 포함)

[갱신계약의 경우]

- 다.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유지중인 갱신형 주계약(전환형 계약 제외)
- 라.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유지중인 주계약에 부가된 갱신형 특약(이 특약 포함)

다만, 다음의 경우는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 포함되지 않으며,

제2-8조(특약내용의 변경 등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가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 이외의 사유로 보험료납입을 면제하는 특약(다만, 이 특약의 보험종목 중에 한합니다)
- 나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의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를 보험료납입면제사유로 하는 주계약 및 부가특약(다만, 이 특약 은 제외합니다)
- 다.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 따른 보험료납입면제사유 발생 시 소멸되는 주계약 및 부가특약
- 라. 중도부가특약

제2관 보험금의 지급

제2-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

이 특약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없습니다.

제2-2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사유

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「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 이상인 장해상태」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"보험료납입면제 대상계약"의 보험료(다만, 추가납입보험료 제외)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.

제2-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

이 특약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습니다.

제2-3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

- ①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 따라 보험료

- 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 신된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 특약은 제2-1조의2(특약의 보험기간 및 갱신) 제5항 제4호에 따라 갱 신되지 않습니다.
- ③ 재해는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며, 특약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중 해당 재해와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
- ④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 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. 다만, 장해분류 표(<부표2-2> 참조)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.
- ⑤ 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(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,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특약은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) 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.
- ⑥ 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 에 따라 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.
- ⑦ 이 특약에서 「동일한 재해」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 다.
- ⑧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. 또한,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하며,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 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더한 장해지급률과 최 초 장해의 장해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.

- ⑨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(이하 "한시장 해"라 합니다)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 의 20%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.
- ⑩ 제2-2조의2(보험료 납입면제사유)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. 다만, 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.
- ①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 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장해분류표(<부표2-2> 참조)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.

제2-4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는 사유

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.

- 1.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.
- 2.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심신상실

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 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

제2-5조 사고증명서

- ① 제1-5조(보험금 등의 청구) 제2호에서 말하는 이 특약의 사고증명서는 "사망진단서, 장해진단서, 진단서(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), 진료기록부 (검사기록지 포함),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"을 말합니다.
- ② 제1항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, 국민건강보험공단, 경찰서 등에서 발

급한 것이어야 합니다.

제2-5조의2 "보험금 등의 지급절차"에 대한 특칙

제1-6조(보험금 등의 지급절차)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면제 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기일 이내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지 못하고 보 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보험료 납 입면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료 납입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<부표2-1> "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"과 같습니다.

제2-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

이 특약은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2-7조 보험수익자의 지정

이 특약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자로 합니다.

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

제2-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

-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 경할 때 이 특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 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.
- ②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「제1호의 사유」로 회사가 지급해야 할 계약 자적립액이 있을 경우 또는 「제2호 및 제3호의 사유」로 회사가 지급해 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「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」 (이하 "산출방법서"라 합니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해당 금액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또한,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 하는 계약은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에서 제외하며, 다음 제3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계약은 「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」이 변경됩니다.
 - 1. 보험료납입면제대상계약(주계약 제외)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경우 (다만, 한 특약 내 여러 보장계약이 있을 경우, 각 보장계약별 효력이 없어진 보장계약에 한